

청년 구직안전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역할과 쟁점

2026. 7. 30.(목), 한국고용정보원 김태환

I 청년고용 문제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의

1. 청년 고용문제의 이해

- (문제의 원인) 청년고용 문제는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과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임.
 - (사회·경제 변화) 디지털 전환, 산업구조 재편, 저성장 기조 등으로 기업의 채용방식 및 인력수요 변화, 공개채용에서 수시채용 및 직무 중심 채용으로 전환되면서 직무역량과 일경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개인의 진로 발달) 현실적 요인으로 인해 개인의 진로목표는 제한되며,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져 직업을 선택하게 됨. 이 과정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진로결정과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청년의 취업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생애 전환과정(School-to-Work Transition)의 의미를 가짐
- (문제의 층위) 청년고용 문제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정책적 대응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층위로 구분 가능

<표 1> 청년 고용문제의 층위

문제의 층위	주요 내용	고용서비스 대응
노동 수요	경제성장률 저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자체의 감소 및 변화	직접 해결 어려움
노동시장 구조	대·중소기업 격차, 이중구조 등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감소	제한적 대응
노동시장 이행	정보·경험·기회 부족, 매칭 실패 등	직접 대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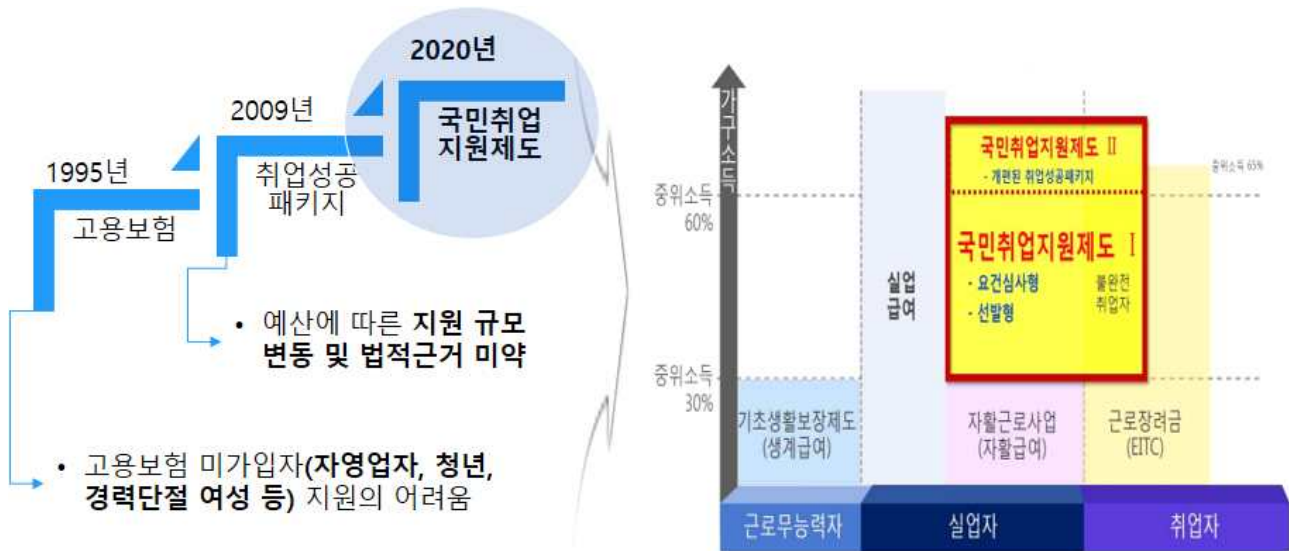
키 메시지

청년고용 문제는 단순한 구인·구직의 미스매치가 아니라 노동수요,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 이행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 가운데 정보·경험·기회 부족과 매칭 실패 등 노동시장 이행 문제에 직접 대응하지만, 청년고용 문제 전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교육·복지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등장과 의의

□ (의의) 고용보험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어려운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① 취업지원서비스와 ②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취업경험과 보험가입 이력을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국가가 법률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적 고용안전망을 의미함.



[그림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등장 배경과 의의

키 메시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특히 청년에게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실패가 장기적인 경력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구직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제공 서비스(무엇을 제공하는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에게 아래와 같은 고용서비스를 제공

<표 2>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지원 서비스 세부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활동계획(IAP)	•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소득 지원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 6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AP수립 참여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15~25만원(1회) 지원
	훈련참여지원수당	•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시 월 최대 28.4만원(6개월) 지원
	참여장려수당	• 고용센터·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시 1회 2만원(3회) 지원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 I·II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그림 2]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제공 주체

키 메시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현금지원 제도가 아니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기반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서비스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종합 고용서비스이다.

1) 김태환 외(2025)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만족도 조사 설계 연구”에서 요약·발췌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누구에게 지원하는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취업취약 정도와 정책대상을 고려하여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I 유형)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됨. **☞ 취업 + 소득지원 병행**
 - (요건심사형) 일정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 지원
 - (선발형) 취업취약계층 중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사전에 설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및 지원
- (II 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취업지원 중심**
- (청년 특례) 청년은 노동시장 최초 진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참여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I 유형에서는 청년 선발형을 통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며, II 유형에서는 소득 및 재산요건 없이 참여할 수 있음.

<표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유형에 따른 주요 지원 서비스

구분	유형	참여 요건				지원 서비스					
		연령	가구		취업 경험 ²⁾	취업 지원 서비스	소득지원				
			소득	재산			구직 촉진 수당	IAP 참여 수당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참여 장려 수당	취업 성공 수당
I 유형	1. 요건 심사형	15~69	60% 이하	4억 이하 ¹⁾	●	●	●				●
	2. 선발형				X	●	●				●
	2-2. 청년	15~34	120% 이하	5억 이하		●	●				▲ ³⁾
II 유형	1. 특정계층	15~69	-	-	-	●		●	●	●	●
	2. 청년층	15~34				●		●	●	●	▲
	3. 중장년층	35~69	100% 이하			●		●	●	●	▲

주 1) I-1 및 I-2-1 에 해당하는 청년은 5억 이하임.

2) 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3) I·II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에게만 제공

키 메시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 전반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고용안전망이며, 청년의 노동시장 최초 진입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한 별도의 참여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참여 현황(청년은 얼마나 참여하는가?)

□ 지난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참여 비율은 약 71.6% ~ 75.0%였음.

<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현황 및 청년 참여 비중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참여자(명)	297,030	316,123	309,290
청년 참여자(15~34세, 명)	212,782	236,972	223,429
청년 참여 비율(%)	71.6	75.0	72.2

주 1) 청년은 15~34세 기준으로 I 유형 및 II 유형 참여자를 합산하여 산출.

자료: 고용노동행정통계시스템

□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참여자 중 청년 특례 유형을 통해 참여한 비율은 66.7%였음.

<표 5>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참여자의 참여 유형별 비중(2025년)

구분		참여자(명)	비중
청년특례	I 유형 선발형(청년)	92,744	41.5%
	II 유형 청년	56,337	25.2%
기타 청년(요건심사형 등)		74,348	33.3%
청년 합계		223,429	100.0%

주 1) 기타 청년은 연령 기준(15~34세)에 해당하는 I 유형 요건심사형·비경활 참여자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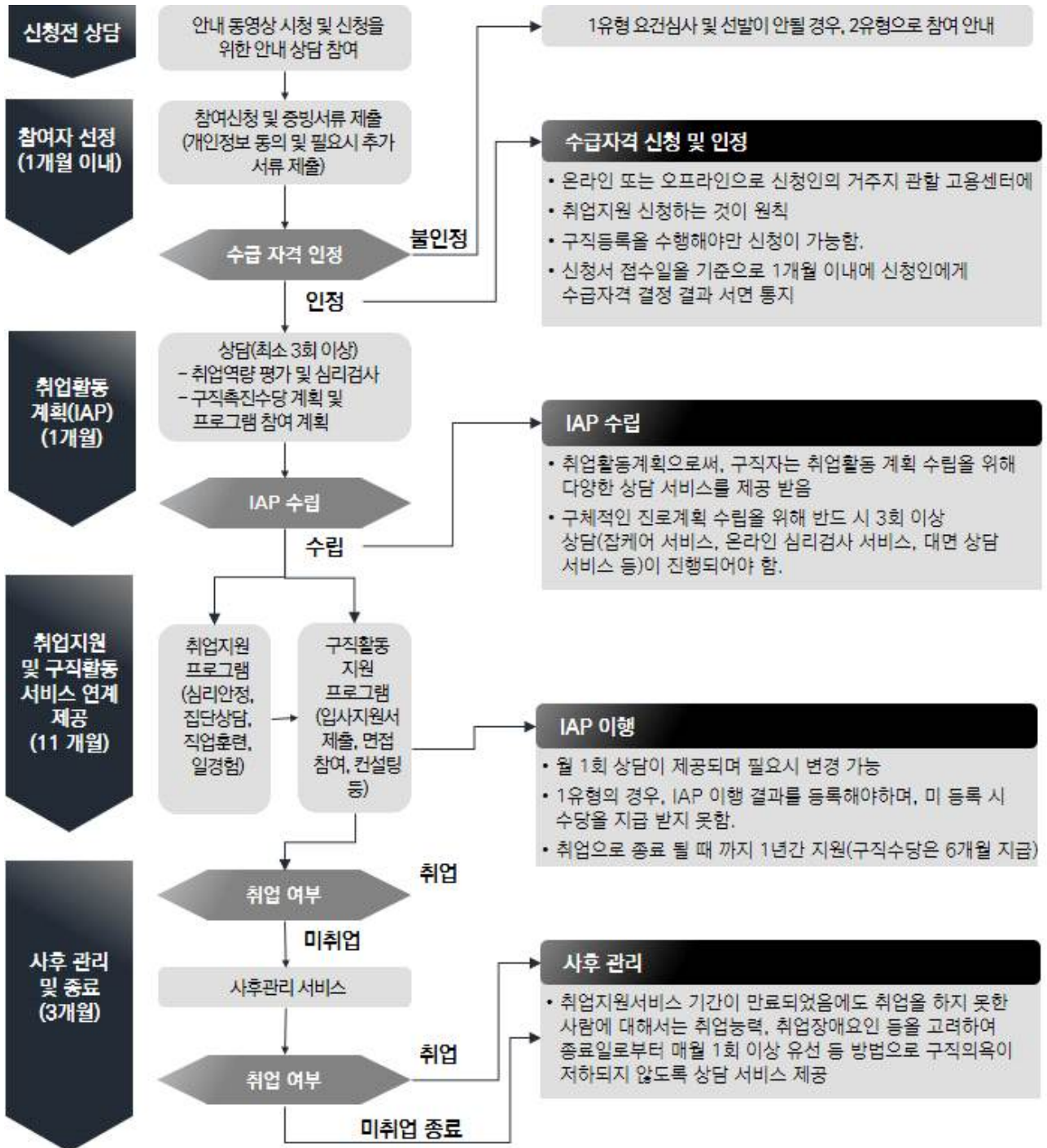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행정통계시스템

키 메시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70% 이상이 청년이며, 청년 참여자 중 약 3분의 2가 청년 특례 유형을 통해 참여하고 있어 청년은 제도의 핵심 정책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과정 및 경험(참여하면 어떻게 진행되는가?)

*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그림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과정

키 메시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현금지원 제도가 아니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중심으로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사후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이다.

5. 청년 고용정책에 있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역할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고용정책과 연계되는 핵심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음.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정책은 재학, 졸업, 구직, 취업, 고용유지 등 노동시장 이행 단계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상담,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며, 다양한 청년정책과 연계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청년도전지원사업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직단념청년과 재학생·졸업생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AP에 따라 미래내일 일경험,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취업 이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기업지원 정책과 연계될 수 있음.



※ 주요 사업 : 청년도전지원사업(3p),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10p), 국민취업지원제도(91p), 미래내일 일경험(7p), K-디지털 트레이닝(별도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p), 고용안정장려금(98p) 등

[그림 4]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연계 고용정책

키 메시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도전지원사업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청년을 유입하고, IAP를 기반으로 일경험·직업훈련·취업알선을 연계하여 취업과 고용유지까지 지원하는 청년 고용서비스의 핵심 플랫폼이다.

- 이 장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 구직안전망으로 보다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한 다섯 가지 정책적 쟁점을 제시하고자 함.

<표 6> 핵심 쟁점

구분	쟁점	핵심 질문
정책의 역할과 대상	① 공공 고용서비스는 청년 고용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	정책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② 청년은 왜 별도의 정책대상이어야 하는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
전달체계와 서비스 운영	③ 대학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누가 지원해야 하는가?
	④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는 균형 있게 작동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⑤ IAP는 청년의 경력설계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1. 공공 고용서비스는 청년 고용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

□ 정책 기본 방향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및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 고용서비스임.
-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데 있음.

□ 현재 운영 현황

-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성과는 취업률, 취업유지율 등 노동시장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서비스 역시 최종 취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 문제 제기

- 청년 고용문제는 노동시장 이행뿐 아니라 노동수요 부족, 노동시장 이중구조, 좋은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그럼에도 공공 고용서비스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핵심 쟁점

공공 고용서비스는 노동시장 이행 지원을 넘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입직 후 경력개발까지 지원해야 하는가?

2. 공공 고용서비스는 청년 고용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

□ 정책 기본 방향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며, 청년의 노동시장 최초 진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참여기준(청년 특례)을 운영하고 있음.
- 청년 특례는 청년의 실업을 단순한 소득 문제로 보기보다, 노동시장 최초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라는 의미를 가짐.

□ 현재 운영 현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약 70% 이상이 청년이며, 청년 참여자의 약 3분의 2는 청년 특례를 통해 참여하고 있음.
- 이처럼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 정책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취업취약계층과는 별도의 참여기준과 지원체계를 적용받고 있음.

□ 문제 제기

- 청년은 노동시장 최초 진입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청년 내부에서도 취업준비도, 직무경험, 경제적 여건 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 따라서 청년을 단순히 취업취약계층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시장 최초 이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청년 특례가 연령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방식이 노동시장 이행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핵심 쟁점

청년은 단순한 취업취약계층인가, 아니면 노동시장 최초 이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정책대상인가?. 별도의 정책 대상이라하면 어떻게 대상을 유형화할 것인가?

3.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가?

□ 정책 기본 방향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두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 고용서비스임.
- 두 제도 모두 상담, 진로·취업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운영 현황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등록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일한 청년이 대학과 고용센터에서 유사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문제 제기

- 청년의 진로발달은 연속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기관 중심으로 서비스가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상당 부분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역할 차별성과 연계체계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음.
- 향후에는 동일한 서비스를 반복 제공하기보다 청년의 진로발달 단계에 맞추어 기관 간 기능을 차별화하고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핵심 쟁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아니면 청년의 진로발달 단계에 맞게 기능을 차별화해야 하는가?

4.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는 균형 있게 작동하고 있는가?

□ 정책 기본 방향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기간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소득지원과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결합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임.
- 소득지원은 청년이 생계 부담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중단하거나 질 낮은 일자리에 성급하게 진입하지 않도록 구직활동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며,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한 노동시장 이행에 있음.

□ 현재 운영 현황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수당 신청 및 지급 관리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상담과 취업지원뿐 아니라 참여요건 확인, 구직활동 점검,

수당 지급 등 행정적 관리 업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청년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제도 참여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이 취업지원서비스보다 소득지원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음.

□ 문제 제기

- 구직기간 중 소득지원은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수당 지급과 이행 관리가 제도 운영의 중심이 될 경우 상담, 경력설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음.
- 반대로 취업성과만을 강조하여 소득지원의 의미를 축소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충분한 구직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실질적인 구직안전망을 제공하기 어려움.
- 따라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상호 대립적인 기능으로 보기보다, 소득지원이 실질적인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을 뒷받침하도록 두 기능의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핵심 쟁점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소득지원은 독립적인 생활안정 기능인가, 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인가?

5. 취업활동계획(IAP)은 청년의 경력설계 도구가 될 수 있는가?

□ 정책 기본 방향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와 상담사가 함께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취업활동계획은 참여자의 취업목표와 구직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운영체계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서비스가 취업활동계획을 중심으로 운영됨.

□ 현재 운영 현황

- 현재 취업활동계획은 희망직종 설정, 직업훈련 참여, 구직활동 이행 등 취업을 목표로 한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해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 문제 제기

- 최근 청년의 경력개발 과정은 단순한 입사지원을 넘어 직무탐색, 직업정보 탐색, 포트폴리오 구축, 프로젝트 수행, 네트워킹, 일경험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계획이 단기적인 취업성과와 구직활동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청년의 장기적인 경력개발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취업활동계획을 단순한 취업관리 도구로 운영할 것인지, 청년의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도구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핵심 쟁점

취업활동계획(IAP)은 단기적인 취업관리를 위한 도구인가, 청년의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도구인가?

[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서비스

가. IAP 예시

③ 취업활동계획서(안) - 앞면

● 취업활동계획서

서비스기관	○○고용센터	담당자명	○○○
		전화번호	044-000-1234

1. 수급자격자 정보 >> 취업지원 전산망에 입력된 자료 자동생성

성명	홍○○	생년월일	1998.12.31.
수급자격 인정일자	2026.3.15.	전화번호	044-123-0000(또는 없음)
IAP 수립일자	2026.4.1.	휴대전화	010-000-1234

취업지원 서비스기간	2026.3.23. ~ 2027.3.22. (12개월)	집중취업 일선기간 (취업노력기간)	2026.12.23. ~ 2027.3.22. (3개월)
------------	-----------------------------------	--------------------------	-----------------------------------

2. □취업 □창업 희망조건 >> 구직등록에서 연동된 취업지원 전산망에 입력된 자료 자동생성

희망근무자①	세종시	희망근무자②	공주시	희망근무자③	
희망직종①	자동차 정비원	희망직종②	자동차 튜닝원	희망직종③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희망임금	3000만원(연봉) 면접 후 결정 가능	근무가능시간	08:00 ~ 19:00

3.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계획 >> 취업지원 전산망에 입력된 자료 자동생성

구분	프로그램명	참여(예정)기간	운영기관명	전화번호
☑ 집단상담	성취프로그램	2026.4.15. ~2026.4.18.	○○고용센터	044-000-0000
☑ 직업훈련	자동차정비기능사	2026.5.10. ~2026.6.30.	○○직업전문학교	044-000-0000
☑ 자격증 시험응시	자동차정비기능사	2026.7.15.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 취업특강	시산을 사로잡는 서류전형 준비	2026.7.2. ~2026.8.1.	사이버 진로교육센터	1577-7114
☑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2026.8.10. ~2026.9.30	○○협회	044-000-0000

4.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활동 계획 >> 취업지원 전산망에 입력된 자료 자동생성

구분	활동(지원)기간	활동(지원)횟수
☑ 입사지원에 필요한 컨설팅 참여	2026.7.1.~2026.7.1.	월 1회 이상
☑ 입사지원서(취업알선상담 포함) 제출	2026.10.2.~2027.3.22.	월 2회 이상
☑ 입사지원에 필요한 컨설팅 참여	2027.1.2.~2027.2.1.	월 1회 이상

나. 수급자격 인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희망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하기 위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며,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 과정이 진행됨.

* 행정시스템 상 '신청경로'로 구분 가능

<표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경로	고용24 홈페이지	고용센터 혹은 민간기관 방문
주요 절차	로그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 증빙자료 등록	기관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상담사가 입력 지원 혹은 직접 입력(내부 시스템)
주요 특징	청년층 및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참여자	디지털 소외계층 참여자

- 수급자격 결정은 크게 수급자격 요건 확인·조사, 미충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결과 통지의 과정을 거침
 -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급자격 결정 결과가 서면 통지되어야 함.
 - 다만, 수급자격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최종 통지는 전자문서(전산망)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자도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의 전자문서 통지 가능
 - 최종 통지 시 향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일정 및 지원내용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함.

다. 취업지원 서비스

-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사후관리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경험하게 됨.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함.
 - 집중 취업알선기간(취업노력기간)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최종 3개월로 원칙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및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사후관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며, 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함.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은 전담 상담사 배정을 통해 계획·관리됨.

○ 전담 상담사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현황을 취업지원 전산망을 통해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 상담 시작·종료 시간은 상담 즉시 입력하고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상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록·관리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입력일로부터 3일 이내 가능

□ 취업지원 서비스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참여자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서비스	기간	참여자 유의사항
취업활동계획 (IAP)		- 초기 상담 및 수급자격 진단 - 심리검사 및 취업활동 계획을 위한 상담 - 취업활동 계획 수립(수당지급 계획)	1개월 이내	상담사와 라포 형성 대면 상담: 3회 이상
취업 활동 계획 이행	취업 상담	월별 1회 전담 상담사와 상담 진행 (유선 가능)	11개월 (취업활동 계획 수립 포함 12개월)	- 대면 상담 2회 - IAP 수립 후 2~3개월 내 1회 - 6회차(IAP 수립 후 5개월) 1회 - 직업훈련의 경우, 자비 부담의 혜택이 제공되기에 최대 4회로 참여 가능 - IAP 성실히 이행
	IAP 재진단	IAP 수립 후 2~3개월 및 5개월 시점(대면 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창업지원 및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 지원과의 연계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 취업알선 및 구인정보제공, 동행면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등 구직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등 * 종료 3개월 전 집중취업알선기간에 반드시 제공		
사후관리		(미취업자) 매월 1회 이상 상담(유선가능) (취업자) 1개월 이내 직장생활 적응 상황 확인 및 6개월 이후 취업성공 수당 지급 신청 안내	3개월	-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는 취/창업, 기간 만료, 중단 등이 있음.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 시 전담 상담사는 취업지원 전산망에 아래와 같이 종료 사유를 등록해야 함.

<표 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 사유

구분	종료 사유
기간만료	취업지원서비스(사후관리기간 포함) 기간만료
취업	①취업(임금근로자), ②취업(노무제공자), ③창업
중단	①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참여자로 선정, ②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③유예기간 만료 혹은 사유 해소 후 미참여, ④수급자격인정철회(취업활동 계획 미수립), ⑤구직촉진수당 중단, ⑥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미달, ⑦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미달, ⑧법 제7조제3항제5호 수급자로 선정, ⑨구직급여 수급자로 선정, ⑩수급자격 인정철회(소득초과 지급정지 3회), ⑪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⑫수급자 본인 희망, ⑬기타
사후관리 중단	①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참여자로 선정, ②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③법 제7조제3항제5호 수급자로 선정, ④구직급여 수급자로 선정, ⑤수급자 본인 희망, ⑥기타
자치단체 이관	자치단체 이관

라. 소득지원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수급요건에 따라 구직촉진 수당 및 취업활동 비용 수당 (Ⅱ 유형), 취업성공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음.
- IAP 참여 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1회차의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시 지급되며, 전담 상담사가 신청
- 기타 수당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가능

<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서비스 주요 내용

구분		대상	내용	지급 기준(시기)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I 유형	- 월 50만원+가족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 분할 지급 가능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시 (2회차 이후) 구직활동 이행시	(2회 차 이후) 온라인 첨부 또는 지정일 방문 *1회차는 상담사 신청
취업 활동 비용	IAP 참여 수당	Ⅱ유형	15~25만원(1회) 지원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상담사 신청
	훈련참여지원 수당		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6개월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시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참여장려수당		1회 2만원 × 3회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시	
취업성공수당		취업자 ¹⁾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년 근속 시 100만원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주30시간 이상 일자리 (노무제공자·프리랜서) 월평균 250만 이상 소득 (창업자) 사업자등록 + 전용공간 + 매출 발생	

주 1) I·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2) 2026년에는 구직촉진 수당 월 60만원으로 증액